

신·구조문대비표

이사회 2023.08.30.

기획위원회 2023.08.10.

1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② (생략)</p> <p><신설></p>	<p>제3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p>
<p>제3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 ④ (생략)</p> <p>⑤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은 외부위원을 6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37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80% ----- ---</p> <p>⑥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2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용어정의) ----- -----.</p>

1. ~ 12. (생략)
13. '일반직'이란 연구직을 제외한 행정직·전문직·별정직을 가리킨다.

제3조(평가대상 및 기준) ① 평가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일반직

구분	합계	부서 평가	개인평가		
			업무실 적평가	업무역량 평가	다면 평가
2급 이상(부장급)	100%	70%	-	20%	10%
3급(팀장급)	100%	30%	40%	30%	-
4급 이하	100%	20%	40%	40%	-

- ② ~ ⑤ (생략)

제5조(평가단위)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일반직은 3급 이상과 4급 이하로 구분한다. 단, 일반직 4급 이하는 직렬별로 시행하며,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별도 평가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 절차) 근무성적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성적평가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제2조 2항의 평가항목별 일정이 명시된 당해연도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일정을 공지한다. 단, 평가의 모든 절차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간은 제외).
2. ~ 8. (생략)

제10조(업무실적평가) ① (생략)

② 일반업무의 경우 평가 대상 직원은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지된 일정 내에

1. ~ 12. (현행과 같음)
13. ----- 행정직·기술직·계약직-----.

제3조(평가대상 및 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

구분	합계	부서 평가	개인평가		
			업무실 적평가	업무역 량평가	다면 평가
2급 이상(사무국장)	100%	70%	-	20%	10%
3급(부서장)	100%	30%	40%	30%	-
4급 이하	100%	20%	40%	40%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단위) -----

-----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
-----.

제9조(근무성적평가 절차) -----
-----.

1. -----
----- 평가대상 직원에게 평가취지,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
-----.
2.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실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9조-----

<p>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일반업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조(시보 직원 평정) ① 시보 직원의 평가기준은 제3조, 평가절차는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p> <p>② 시보직원의 평가기준일은 시보 임용 후 11개월 되는 시점으로 한다.</p> <p>③ (생략)</p>	<p>-----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조(시보 직원 평정) ① 시보 직원의 평가는 일반업무평가와 업무역량평가만 실시하며,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② ----- - 5개월 -----.</p> <p>③ (현행과 같음)</p>
---	--

③ 연구실적심사세칙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원내연구실적) ①·② (생략)</p> <p>③ 원내연구실적의 결과물 형태는 다음에 한한다.</p> <p>1. (생략)</p> <p>2. 제9조 1항에 규정된 논문(A)·논문(B)</p> <p>3. (생략)</p> <p>④ (생략)</p>	<p>제8조(원내연구실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논문(A)·논문(B)</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